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90

발의연월일: 2025. 2. 17.

발 의 자: 박민규·박희승·김한규

이훈기 • 윤후덕 • 김우영

박정현 • 윤준병 • 민병덕

황정아 · 강준현 · 조인철

유동수 · 강유정 · 한민수

진선미 • 박선원 • 부승찬

서영석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역연금에 따른 연금이나 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임의가입만 인정하고 있음.

반면 국민연금의 수급요건이 완성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되는 등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는 별다른 제약 없이 직역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즉, 공무원으로 10년 동안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이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연계를 신청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반면, 기업에서 10년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 것임.

특히나 공무원연금 등의 수급권이 10년 가입으로 단축되면서 불과 10년의 공무원연금을 납입한 사람이라도 퇴직하여 민간분야에 취업시임의가입을 해야하는 큰 부담이 있음. 물론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국민연금 직장가입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는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연금수급권을 부여하는 공적연금연계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공무원연금의 개시연령이 퇴직시점이라 연계시 연금 개시연령이 늦춰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민간 이직자의 불균형 해소와 보편적 국민의 노후보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현행법상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호).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다.

제9조제1호라목 중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 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u>다만, 다</u>	<u><단서</u>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u>삭제></u>
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u><삭 제></u>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	
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	
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	
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	
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	
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	
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	
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	

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③ (생 략)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제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 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가. ~ 다. (생략)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신 설>

②・③ (현행과 같음)
]9조(지역가입자)
·
1
1.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수급권자</u>

마. 「공무원연금법」, 「공 무원 재해보상법」, 「사 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 는 「별정우체국법」에 따 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 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 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 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 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 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 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5. (생략)

<u>금등수급권자"라 한다)</u> <<u>삭 제></u>

3. ~ 5. (현행과 같음)